

## 울산광역시 초·중등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정된 아동 복지법을 중심으로-

김영주 · 박혜원  
아동 · 가정복지학 전공

### <요약>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가정내 폭력에 관한 부분이 강화되었다. 또한 누구든지 아동 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보육교사와 같은 아동관련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 초중고등학교 교사 116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내용 중 가정내 폭력이나 신고에 아동 학대에 관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증상이 다른 학대의 증상에 비해 관찰되기 어렵고 그 즉각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결과가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가져오지 않는 위축행동이나 자아상의 문제로 나타나 교사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도 다른 유형의 학대와 마찬가지로, 혹은 보다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더 해로운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결과 아동이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에게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내용중 신고자에 대한 사항을 물어본 결과 자신들이 아동 학대의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는 것을 잘 모르는 교사가 상당수 있었다. 또한 신고 의무자로 규정된 것을 알긴 하되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다. 이는 아동 학대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도 법 개정에 따라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시급함을 알려 준다.

# Elementary, middle & high school teacher's apprehension about child abuse in Ulsan metropolitan city. -Focused on the revised child welfare law-

Kim, youngjoo · Park, hyewon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 <abstract>

On the revised child welfare law, the family violence to children was intensified. and whoever can declare child abuse. Especially, experts as teacher have a duty to declare when they see 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acher's perception on the child abus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16 teachers selected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Ulsan metro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The data was analyzed by percentile, ANOVA, pearson's r.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 the subjects have a perception that physical and sexual abuse are more serious tha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re overlooked because the emotional abused children have not conduct behavior in the classroom. But emotional abuse is more serious because it happened in everyday life. The symptoms of emotional abuse are low self esteem, and withdrawal. Therefore, we need education for teacher about th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nd, many teachers don't know that they have duty to declare child abuse. Although they don't know carefully.

## I . 문제의 제기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는 아동 학대의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함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학대에 포함됨이 명시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대부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같은 가정 내 학대에 관련한 부분이다.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 학대는 가족 밖의 다른 성인이나 양육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학대하고 방임하는 부모의 61%는 친모나 계모이고, 30%는 친부나 계부이며 아동 학대의 10%미만만이 부모 외의 다른 성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한다(The American Human

Association, 1982).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가 가정 밖의 다른 성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아동 학대는 사적인 일로 여겨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개입이나 처치가 어려운 특성을 지녀왔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은 두통·복통·천식·야뇨증·불면증·류머티스 관절염·말더듬과 같은 언어장애·발달장애, 우울증·정신병·자살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 학교 부적응·학습부진(장애)·도벽·공격행동·대인 관계 장애 등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도벽이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하게 된다(연진영, 1992)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동 학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Gelles & Straus(1987)는 사회적 폭력이 증가할 경우 가정폭력도 증가하며, 그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폭력이 늘어날 경우 가족 내 폭력이 늘어나는 경향이고 가족 내 폭력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폭력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 남편과 부인 사이에 폭력에 있는 경우 자녀에게도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 학대를 막을만한 관련법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동 학대를 사회적으로 다를 때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아동 복지법이 있다. 이 아동 복지법에 의하면 누구나 아동 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학교, 병원에서와 같이 가정 밖에서 아동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나 의사 혹은 기타 아동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동 학대를 발견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와 아동 학대가 발생된 경우 피학대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아동전문 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아동 상담소와 같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금번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보육 시설의 종사자나 초·중등 교원은 아동 학대의 범위와 신고의무자 및 신고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어떤 것이 아동 학대인지, 혹은 아동 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울산시내 초·중등 교사 116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따라 변경된 아동 학대의 범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학교 내에서 아동이 어떠한 증상을 보일 경우 아동 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 초·중등 교사들의 아동 학대를 정확히 식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따라 아동 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초·중등 교원이 새로이 바뀐 아동 학대의 범위와 신고 의무자,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울산시 초·중등 교원 116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 대상자는 116명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초등학교 교사(32.8%), 중학교 교사(25%) 순이었다. 이중 여성은 65.5%로 남성(34.5%)보다 많았다. 연령은 주로 3, 40대가 대부분이었다. 자녀 양육 경험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결혼 여부와 결혼한 경우 자녀 유무를 물었는데 결혼하여 자녀를 둔 경우가 8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교직에 종사한 연수는 10년 이상이 60% 정도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소속	초등학교	38(32.8)
	중학교	29(25.0)
	고등학교	49(42.2)
	계	116(100.0)
성별	남	40(34.5)
	여	76(65.5)
	계	116(100.0)
연령	30세 미만	16(13.8)
	30세 이상 40세 미만	51(36.5)
	40세 이상 50세 이상	44(37.8)
	50세 이상	5(4.3)
	계	116(100.0)
결혼상태	미혼	15(12.9)
	기혼이며 자녀가 없다	3(2.6)
	기혼이며 자녀가 있다	98(84.5)
	계	116(100.0)
교직년수	0 - 5년	19(16.4)
	6 - 10년	20(17.2)
	11 - 15년	28(24.1)
	16 - 20년	28(24.1)
	20년 이상	21(18.1)
	계	116(100.0)

## 2.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조사 도구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선행연구(김혜선, 1992; 이재연, 1991; 이재연, 1995; 최규련, 1987; Gelles & Straus, 1987; Knutson, 1995)를 바탕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에 해당하는 5문항씩 총 20문항과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신고 가능자 및 신고 의무자에 관한 6문항, 신고 사항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대에 관한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해도 학대로 볼 수 있다, 가끔 일어난다해도 학대로 볼 수 있다,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만 학대로 볼 수 있다, 전혀 학대로 볼 수 없다로 이루

어진 선택지를 주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7.5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해도 학대로 볼 수 있다를 40점, 가끔 일어난다 해도 학대로 볼 수 있다를 30점,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만 학대로 볼 수 있다를 20점, 전혀 학대로 볼 수 없다를 10점으로 점수를 주어 분석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대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t 값을 구하였고, 교직 종사 년수나 연령, 결혼 상태,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F 값을 구하였다.

### III. 아동 학대에 관한 울산시 초·중등 교사의 인식

#### 1. 아동의 신체적 학대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아동의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손상이란 구타나 폭력에 의한 명이나 화상·찢김·골절·장기파열·기능의 손상 등을 말하며 또한 충격·관통·열·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을 모두 포함한다(안동현, 2000).

신체적 학대의 결과로 아동은 사회성이 저하되고 위축되어 있으며, 우울, 불안하며 내재화된 문제 행동과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며 신체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신이 더 공격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안동현, 2000).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은 오랜 기간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기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아동 학대는 피해자와加害者가 긴밀한 관계라는 점과 폭력에 의한 신체적·감정적 영향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폭력이 폭력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내 다른 성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민수홍, 1998).

아동의 신체적 학대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체적 학대에 관한 선행 연구(김혜선, 1992; 이재연, 1991; 이재연, 1995; 최규련, 1987)를 바탕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lt;표 2&gt; 아동의 신체적 학대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빈도(%)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해도 학대로 볼 수 있다	가끔 일어나는 경우에 학대로 볼 수 있다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만 학대로 볼 수 있다.	전혀 학대로 볼 수 없다.	계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가 있다.	44(37.9)	42(36.2)	25(21.6)	5( 4.3)	116(100.0)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가 있다.	63(54.3)	27(23.3)	24(20.7)	2( 1.7)	116(100.0)
담배불이나 화상에 의 한 상처가 있다.	101(87.1)	7( 6.0)	6( 5.2)	2( 1.7)	116(100.0)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이 있다.	62(53.4)	36(31.0)	15(12.9)	3( 2.6)	116(100.0)
설명하기 어려운 절상 의 흔적이 있다.	64(55.2)	35(30.2)	15(12.9)	2( 1.7)	116(100.0)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대부분의 문항 내용을 아동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담배 불이나 화상에 의한 상처가 있을 경우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해도 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가 87%정도로 아주 많았다. 그러나 아동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는 경우를 학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교사들이 꼭 학대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아동의 다른 활동에 의해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초·중고등학교인지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가 있다는 문항에서 교직에 종사한 연수가 적음에 따라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0-5년 34.83, 6-10년 34.72, 11-15년 34.19, 16-20년 30.57, 21-25년 29.14. F 값 3.118, P<.05). 반면 이 문항은 연령에 따라서는 학대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아마도 교직에 오래 종사할수록 아동이 다치고 상처가 나는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보아서 학대의 결과로 인식하기 보다는 아동의 다른 활동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서적 (또는 언어적)학대란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나 감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언어 상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정서적·언어적 폭력의 유형으로는 놀림이나 심한 욕설, 따돌림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징적 폭력행위"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협이나 협박과 같은 "심각한 폭언" 등이 포함된다(김준호 외, 1997). 이러한 아동의 정서적 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규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이다(Knutson, 1995).

우리 나라에서 정서적 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이재연, 2000)에서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한 부모가 각각 33.7%와 53.6%로 나타났으며, 야단이나 고함치기는 아버지 55.1%, 어머니 79.6%로 나타났다. 그리고 욕하거나 악담퍼붓기의 경우도 아버지 7.8%, 어머니 21.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부모들은 야단이나 고함치기 행위를 가장

자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자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언어로 아동에 대해서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외에도 아동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립시켜 두거나( 예를 들어 다락방에 감금 시켜 두거나 장시간 의자에 묶어 놓는 것을 주는 것)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의 결과 발달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별 다른 질병이 없는데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지체되기도 한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될 경우, 그리고 위탁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 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이외에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문제 행동, 정신 신경성 반응, 신경성 기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증상을 바탕으로 총 5문항을 작성하여 교사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의 정서적 학대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빈도(%)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해도 학대로 볼 수 있다	가끔 일어나는 경우에 학대로 볼 수 있다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만 학대로 볼 수 있다.	전혀 학대로 볼 수 없다.	계
자살시도를 한다.	76(65.5)	23(19.8)	12(10.3)	5(4.3)	116(100.0)
반사회적, 과격적 행동 을 보인다.	51(44.0)	36(31.0)	23(19.8)	6(5.2)	116(100.0)
정신신경성 반응(히스 테리, 강박, 공포)을 보 인다.	53(45.7)	35(30.2)	25(21.6)	3(2.6)	116(100.0)
지나치게 발달이 지연 된다.	32(27.8)	21(18.3)	28(24.3)	34(29.6)	115(100.0)
신경성 기질(수면장애, 놀이장애)을 보인다.	26(22.6)	31(27.0)	41(35.8)	17(14.8)	115(100.0)

정서적 학대 증상 중에서 자살시도를 한다는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해도 학대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각한 교사가 65.5%인 반면 발달지연이나 신경성 기질(수면 장애, 놀이장애)을 보이는 것은 학대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덜 했다. 발달지연이나 신경성 기질과 같은 것은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교사 집단간에 자살시도를 한다는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초등학교 36.38, 중학교 35.17, 고등학교 32.86. F 값 3.179, P<.05). 낮은 연령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일수록 자살 시도를 아동 학대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자살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성적이나 교우관계, 이성관계의 문제와 같은 학대 외의 다른 문제일 가능성은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학대외에는 자살을 시도할 만한 주변적인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을 보인다는 문항에서도 교직에 종사한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0-5년 28.89, 6-10년 34.44, 11-15년 32.34, 16-20년 31.76, 21-25년 27.71. F 값 3.228, P<.05). 0-5년 정도 교직에 종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직에 종사한 연수가 길어질수록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이 아동 학대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적어졌다. 이는 신체적 학대에 관한 인식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는 경우에 교직 연수가 길어질수록 학대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 3. 아동의 성 학대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성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 회통, 성 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규정한다. 즉 성 학대란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성적 행위·성기노출·자위행위·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 모두를 말한다(안동현, 2000).

성적 학대의 문제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어 조기에 발견과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적 학대의 유형을 언급해 보면, 아이의 음부를 애무하거나 성교를 하는 것, 근친상간, 남색, 아이앞에서의 성기 노출 그리고 성적 착취가 있다.

성적 학대를 받을 경우 아동은 "손상관련 성적 행동(traumatic sexualization)"이라는 나아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금전이나 선물, 관심 등을 얻기 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거나 공포심, 수치심, 혼돈 등 성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것은 발전하여 심한 다이어트, 폭식, 대식과 같은 식사장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안동현, 2000b).

이러한 성 학대의 결과에 대한 5문항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 아동의 성 학대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빈도(%)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해도 학대로 볼 수 있다	가끔 일어나는 경우에 학대로 볼 수 있다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만 학대로 볼 수 있다.	전혀 학대로 볼 수 없다.	계
걷거나 앓는데 어려움 을 보인다.	39(33.9)	29(25.2)	27(23.5)	20(17.4)	115(100.0)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을 입고 있다.	85(73.3)	22(19.0)	8(6.9)	1(.9)	116(100.0)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 움을 호소한다.	60(52.2)	32(27.8)	15(13.0)	8(7.0)	115(100.0)
임신을 했다.	89(77.4)	16(13.9)	2(1.7)	8(7.0)	115(100.0)
성병에 감염되었다.	88(77.2)	12(10.5)	6(5.3)	8(7.0)	114(100.0)

성병에 감염되거나 임신을 한 경우,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을 입은 경우를 학대로 본 반면, 걷거나 앓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회음부의 통증이나 가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아

동 학대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걷거나 앓는데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나 회음부의 통증은 잘 관찰되지도 않을 뿐더러 성 학대만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감염된 것은 성 행위 이외의 다른 경로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아동의 경우 자발적으로 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 학대에 관한 문항 중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문항은 교사의 성별에 따라 아동 학대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달랐다(남 33.26, 여 37.84 t 값 11.842, p<.01). 교사의 성별에 따른 성 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이 문항 이외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교사의 인식이 남교사의 인식보다 높았다. 이는 성 학대의 대상이 주로 여아이기 때문에 동성인 여교사의 인식이 남교사에 비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외에도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연령과 교직에 종사한 연수에 따라 아동의 성 학대 증상에 대한 인식이 임신을 했다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

&lt;표 5&gt; 교사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 학대 증상에 대한 인식

	연령								F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M	SD	M	SD	M	SD	M	SD		
14. 임신을 했다.	35.71	9.78	38.65	4.26	36.27	9.02	27.50	13.57	8.172***	
15. 성병에 감염되었다.	35.71	9.26	38.51	4.63	36.42	9.00	26.67	13.71	8.785***	

p&lt;.001

&lt;표 6&gt; 교사의 교직 종사 년수에 따른 아동의 성 학대 증상에 대한 인식

	교직년수										F비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이상			
	M	SD	M	SD	M	SD	M	SD	M	SD		
14. 임신을 했다.	37.41	7.12	37.43	7.41	39.13	2.85	38.30	5.09	30.57	13.05	7.822***	
15. 성병에 감염되었다.	37.41	6.56	37.65	6.99	39.33	2.52	37.36	6.55	31.14	13.23	6.160***	

p&lt;.001

이 두 결과는 두 문항에 대한 성 학대 인식이 초기에는 비교적 낮다가 이후로 높아졌다가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교사가 30대 이전에는 교직 경험이나 연령에 따른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아동의 성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가 3,40대에 이르러 가정에서 자신도 부모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아동의 성 학대에 관련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인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이가 들

거나 교직 연수가 20년 이상되면 자신의 자녀들도 다 커서 성학대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학교에서도 원로 교사로서 직접 아동을 담당하는 담임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어 성학대에 대한 인식이 둔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아동의 방임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방임이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로 규정된다(안동현, 2000). 방임에는 의료적 처치의 거부 등 신체적 방임, 유기,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감독,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이 있다.

이재연(2000)의 연구에 따르면 1년에 20회 이상 방임이 일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20.2%에 해당되고 이중 아버지에게 방임되는 경우는 2.5%, 어머니한테 방임되는 경우는 5.4%, 부모 모두에게 방임되는 경우는 1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 다음으로 방임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유아기, 학령기에 방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의 후유증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 방임이 심 할수록 전체 자아상이 낮고 정서가 불안정하며, 심한 정신 병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조홍식, 2000).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조항에 따라 아동의 방임을 의식주의 제공, 의료적 처치, 비행에 관한 통제 등에 관한 총 5문항을 구성하여 교사들에게 그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아동의 방임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빈도(%)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해도 학대로 볼 수 있다	가끔 일어나는 경우에 학대로 볼 수 있다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만 학대로 볼 수 있다.	전혀 학대로 볼 수 없다.	계
지속적인 배고픔과 나쁜 위생상태, 부적절한 옷차림, 경제적 지원부족을 보인다.	63(54.3)	23(19.8)	25(21.6)	5(4.3)	116(100.0)
적절한 치료와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다.	34(29.8)	35(30.7)	29(25.4)	16(14.0)	114(100.0)
학교에 너무 일찍 오고 너무 늦게 하교한다.	13(11.4)	30(26.3)	41(36.0)	30(26.3)	114(100.0)
구걸하거나 훔쳐도 부모의 제재를 받지 못한다.	52(44.8)	33(28.4)	21(18.1)	10(8.6)	116(100.0)
비행을 저질러도 부모와 협의할 수 없다.	53(45.7)	30(25.9)	26(22.4)	7(6.0)	116(100.0)

방임은 의식주의 제공, 치료, 비행 등의 문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방임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문제 행동, 즉 구걸이나 비행을 저질러도 부모와 협의할 수 없을 때는 학대의 결과로 인식하지만 별다른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동 즉 학교에 너무 일찍 오고 너무 늦게 가는 것은 방임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정서적 학대의 결과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문제 행동은 학대의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는 반면 위축된 행동이나 학교의 질서에 순응하는 행동은 학대의 결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아동의 방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직에 종사한 기간, 초중고 등학교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 5.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아동 학대 신고에 관한 울산시 초·중등 교사의 인식

### 1)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신고 가능자 및 신고 의무자에 관한 교사의 인식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 학대를 신고할 수 있고, 특히 신고 의무자로 초중등 교원이나 보육 교사들이 추가되었다. 임와같이 개정된 사항을 초중등 교사들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신고 가능자 및 신고 의무자에 관한 교사의 인식

	전혀 몰랐다	잘 몰랐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대강 알았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누구든지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申告할 수 있다.	5(4.3)	29(25.0)	76(65.5)	6(5.2)	116(100.0)
초·중등교육법 第19條의 규정에 의한 교원	20(17.2)	60(51.7)	32(27.6)	4(3.4)	116(100.0)
의료법 第3條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18(15.9)	57(49.1)	37(31.9)	1(.9)	113(100.0)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長	9(8.1)	39(35.1)	60(54.1)	3(2.7)	111(100.0)
장애인복지법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者	7(6.1)	45(39.5)	60(52.6)	2(1.8)	114(100.0)
영유아보육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8(7.0)	44(38.6)	59(51.8)	3(2.6)	114(100.0)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신고 가능자 및 신고 의무자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본 결과 교사들은 새로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따라 교원이나 의료인이 신고 의무자인 것을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덜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들이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의해 신고 의무자인 것을 68%의 교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학교에서 학대 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 아동이 아동 학대로 신고되어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신고 가능자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직에 종사한 기간,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집단 별로 차이가 없었다.

## 2)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신고사항에 관한 교사의 인식

아동 학대를 발견할 경우 어디에 신고할 것인지 혹은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을 아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0>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신고 사항에 관한 교사의 인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신고장소	신고장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안다	10(27.0)	6(20.7)	12(25.0)	28(24.0)
	신고장소는 알고 전화번호는 모른다	16(43.4)	23(79.3)	36((75.0)	75(65.0)
	모르겠다	11(29.6)			11(11.0)
	계	37(100.0)	29(100.0)	48(100.0)	114(100)

조사 결과 대부분 신고 장소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신고할 곳의 전화번호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선 교육 기관을 통해서 아동 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곳이 어디인지에 관한 연락망이 홍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 사항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직에 종사한 기간,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성별이나 연령, 결혼 여부,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직에 종사한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신고 사항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연령 및 교직 연수에 따른 교사의 인식  
(N=116)

	교직 연수	연령
신고사항에 대한 교사의 인식	-0.194*	-0.233*

\* p <0.05

분석 결과를 보면 교직 연수가 적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신고 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이 결과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연령이 낮고, 교직에 종사한 기간이 짧을수록 교직에 대한 열의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신고 사항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결론 및 논의

오늘날 아동학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해악의 장·단기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가정내의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울산 시내 초·중등 교사의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증상이 다른 학대의 증상에 비해 관찰되기 어렵고 그 즉각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때문이기도 하다. 또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결과가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위축되거나 자아상의 왜곡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방임은 보다 일반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더 해로운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방임도 아동에 대한 학대의 일종이며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학대의 경우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성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결과를 토대로 남교사를 대상으로 성학대의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30대 미만이거나 교직에 종사한 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 혹은 50세 이상이거나 교직 연수에 종사한지 20년이 지난 경우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학대의 증상에 대해서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들에게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내용중 신고자에 대한 사항을 물어본 결과 자신들이 아동 학대의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는 것을 잘 모르는 교사가 상당수 있었다. 또한 신고 의무자로 규정된 것을 알긴 하되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다. 이는 아동 학대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도 법 개정에 따라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시급함을 알려 준다. 따라서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따라 아동 학대를 신고할 의무를 지니는 아동 관련 전문가, 특히 교사들이 아동 보호를 위한 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피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기 가족의 위기와 스트레스에 관한 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부모의 특성(정신병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의 교정 및 아동 양육 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표갑수, 1993).

또한 사회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경시하고 아동 학대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의 인식이 아동 학대를 보다 용이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 그 예로 캠페인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시민 모임, 혹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모회를 통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김준호 외(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97. 9) pp.5-28.
- 김혜선(1992). 배우자선택 과정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민수홍(1998).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27. (98. 6) pp.91-108.
- 안동현(2000a). 신고된 아동에서 학대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보고서.
- \_\_\_\_\_ (2000b). 아동 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 학대의 이해. 울산광역시 보육정보센타 부설 아동상담소 심포지움 자료집.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이재연(199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6-39.
- \_\_\_\_\_ (1995). 아동학대 방지를 통한 아동 보호사업. *국책연구*, 겨울호, 71-84.
- \_\_\_\_\_ (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보고서.
- 조홍식(2000). 아동학대의 후유증 연구: 사회복지 입소 시설 아동학대 후유증의 실태와 대책 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보고서.
- 표갑수(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 아동복지학 창간호*, 156-177.
- 최규련(1987).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The American Human Association(1982). National analysis of official neglect and abuse reporting.
- Knutson, J. F. (199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ed children: Putativ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401-431.
- Gelles, R.. J. & Straus, M. A.(1987). Is violence toward children increasing? A comparison of 1975 and 1985 national survey rates. *J. of Interpersonal Violence*, 2, 212-222.